

2011. 7. 15.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292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3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4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7. 7.	2011. 7.12.	2011. 7.14.	2011. 7.14.	지역개발과장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7. 7.	2011. 7.12.	2011. 7.14.	2011. 7.14.	환경정책과장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7. 7.	2011. 7.12.	2011. 7.14.	2011. 7.14.	환경정책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②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축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축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차액 보전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③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어온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차액 보전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
(안 제20조의 2 삭제, 안 제28조의 2 신설)
- 나.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정비
(안 별표24 1호 사목 및 2호)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②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나. 가축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4항 신설)

③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인상(안 별표 7)
- 나.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26조 제4항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하천 주변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연접개발 제한의 폐지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장이 여러 곳에 분산됨으로 인해 녹지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를 개정하여 연접 개발제한을 폐지하였고, 연접개발폐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음.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연접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인 제20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시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됨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위촉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계획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 등 설치 가능한 지역 정비

개정안 별표 24의 제1호 사목에서는 지방하천 중 동달천 등 20개 지방하천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안 별표 24의 제2호에서는 50m이내 10호이상의 자연마을에서 50m의 거리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위 사항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의 제1호 사목에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2의 제2호에서 거리 제한 규정은 없는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짐.

강 주변을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측면과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적 측면도 수반할 수 있어, 동전의 양면성을 지닌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②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인상과 대행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주된 내용임.

대행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4호)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루고, 가축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음.

가. 수수료 인상의 적정성 여부

현행 조례안에서는 가축사육 규모와 상관없이 100ℓ 당 1,000원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혀가 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수료율도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

충주시에서는 지난 해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을 위해 1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분뇨 등 수집운반체계 개선 및 처리비용 산정 용역'을 발주한 바 있음. (과업수행 :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결과(아래 표 참조) 가축분뇨의 표준원가 산정요금은 100ℓ 당 1,760원에서 1,670원으로, 현행 수수료는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참고로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개최된 '충주시소비자 보호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음.

<용역 157페이지, 표 7.19> 가축분뇨 수수료 산정

(단위 : 원, 년)

구분	부과기준	구분	수집운반비	차리비	수수료
가축분뇨	100ℓ 당	허가대상	1,560원	200원	1,760원
	100ℓ 당	신고대상	1,560원	150원	1,710원
	100ℓ 당	신고미만	1,560원	110원	1,670원

나. 규모별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의 적정성

수수료 산정에 있어 규모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차등을 두 경우 영세 축산업자의 보호를 위해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대규모 축산업자에 대한 수집·운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음.

또한, 용역 결과(7페이지)에서도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수집운반비는 규모별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대규모 축산업자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영세업자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③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이후 한 번도 인상 되지 않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9% 정도 인상하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대행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차액 보전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

용역 결과(11페이지 표 참조) 표준원가 산정요금은 수거식 화장실 분뇨의 경우 100ℓ 당 1,700원이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본요금이 16,512원인 것으로 나타남.

현행 수수료는 표준원가의 60~70%에 불과한 실정임으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동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통합요금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읍면지역의 요금 상승률은 22~26%정도로 다소 높은 수준임.

그러나, 이것은 용역의 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읍면지역의 처리단가가 동지역 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에도 그 동안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읍면지역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부분인 것으로 사료됨.

<용역 155페이지, 표 7.17> 읍면동 수수료 통합에 따른 상승율

구분	부과기준	지역	현행요금 (원)	표준원가 산정요금		통합요금	
				요금(원)	상승률(%)	요금(원)	상승률(%)
수거식 화장실(분뇨)	10ℓ 당	동지역	100	170	70%	170	70%
	10ℓ 당	읍면지역	86	176	105%	170	98%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수처리 시설, 정화조)	기본요금 (750ℓ 까지)	동지역	9,925	16,512	66%	16,512	66%
		읍면지역	8,830	19,165	117%	16,512	87%
	초과요금 (100ℓ마다)	동지역	1,240	1,920	55%	1,920	55%
		읍면지역	1,060	2,235	111%	1,920	81%

나. 대행업자에 대한 차액보전 및 재정지원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대행업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용역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현실화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분뇨 수집·운반은 충주시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수수료에 대한 차액의 일부 보전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조례안 개정취지에서와 같이 하수관거 처리사업으로 인한 물량감소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금년 개정된 바 있고 「하수도법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에서는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폐업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 조례안과 같이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인한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20개 하천이 개발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는데, 선정 기준은?

답변 : 지방하천은 1급, 2급으로 구분됨. 2급하천 주변에 규제를 해제하는 사항임

(2) 질의 : 도시계획위원의 위촉 방식은?

답변 : 당연직은 시 공무원, 위촉직은 대학교, 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아 위촉함.

②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답변 :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할 경우 사용료를 인상하던지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의 일부 지원이 필요함.

(2) 질의 : 수수료 인상을 위해 발주한 용역에
수입 등 대행업체의 경영분석이 없나?

답변 : 요약을 해서 제출하겠음.

(3) 질의 : 축산업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곳은?

답변 : 양돈업

③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조례 제26조의 대행계약 체결과
제30조 영업허가의 차이점은?

답변 :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협약에
대하여 협약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함.

6. 심사결과

-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